

「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「임실군의회 회의규칙」 제19조의 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2. 2. 11.

임실군의회 의장



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이유

- 상임위별 소관사항에 대한 전문성강화와 업무량의 적정 배분을 통한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기하기 위함.

2. 주요 내용

-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(안 제10조제2항)
 - － 운영행정위원회 소관
의회사무과, 기획감사실, 행정문화국, 직속기관 ⇒ 12개 부서
 - － 산업건설위원회 소관
복지환경국, 산업건설국 ⇒ 11개 부서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협의 등 : 해당없음
- 심사예고 : 5일
- 기타 : 개정조례안 1부

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) ① ” 생략 “

② 각 상임위원회는 다음의 업무 및 부서에 관한 사항을 해당 소관으로 한다.

1. 운영행정위원회

가. 의회 운영,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

나. 의회사무과

다. 기획감사실

라. 행정문화국

마. 직속기관

바. 읍면

2. 산업건설위원회

가. 복지환경국

나. 산업건설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) ① 생 략 ② 생 략 1. 운영행정위원회 가. 의회 운영,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 나. 의회사무과 다. 기획감사실 라. 행정문화국 <u>마. 복지환경국</u> 바. 읍면	제10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. 운영행정위원회 가. ----- ----- 나. ----- 다. ----- 라. ----- <u>마. 직속기관</u> 바. ---
2. 산업건설위원회 가. 산업건설국 <u>나. 직속기관</u>	2. 산업건설위원회 <u>가. 복지환경국</u> 나. 산업건설국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(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)

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

- 임실군의회 진남근 의원